

건축물 시공시 내화구조 관리 대폭 강화

건설교통부는 내화구조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2005년 5월 2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내화구조는 건축물 화재 발생시 실내 거주자들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일정시간 붕괴를 막아주는 구조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는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화페인트, 석고보드패널 등의 내화구조용 제품에 대하여 공장생산 단계에서의 품질관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이 실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과정에서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내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품의 생산, 공급 및 시공에 이르는 내화구조의 공정에 따라 제조업자, 공급업자, 시공업자 및 감리자가 각각 품질관리확인을 서면으로 작성·날인하는 「품질관리확인시스템」을 도입키로 하였다. 작성된 품질관리확인서는 최종적으로 허가관청에

제출되어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일단 건축물이 완공되면 적정 내화구조의 사용과 시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제품 생산공장과 시공현장 사이에 내화구조의 연속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일반 건축물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내화구조의 부정 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2년간 신규 내화구조 생산을 금지하고 적정 품질관리업체에 내화구조 생산기간을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기관을 기존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독 시험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정받은 공인기관으로 시험기관을 다변화하였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2005. 6. 30일자 관보 게재)

〈주요내용〉

1. 인정 및 취소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동일한 구조명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시험결과 불합격으로 인정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는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2. 인정기관은 국내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료 및 시험체 관리기준을 강화함.
3. 성능인정 기간 연장 등 재인정을 위한 시료채취는 당초 인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다만, 시험기관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4. 당초 성능인정된 구조의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하고 대표자 변경 등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 시에는 60일 이내에 인정기관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함.
5. 성능인정을 받은 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생산·제조를 위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 함.
6. 자체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거나 신청서류의 보완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
7. 인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상태 확인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함.

8. 인정기관의 장은 성능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확인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90일 간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함.
9. 성능인정이 취소되거나 성능인정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함.
10.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 내의 측정은 거실(living room)에서 하며,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 대상 공간으로 함.
11. 표준 바닥구조는 구조 별로 5종을 제시하고 온돌층을 제외한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두께를 벽식 및 혼합구조는 210mm이상, 라멘구조는 150mm이상, 무량판 구조는 180mm이상으로 함.
12. 등급별 성능기준을 중량 충격음 및 경량 충격음을 4개 등급으로 정함

방재청, 민관합동 내진기준 만든다.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민관합동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2005년 6월 30일 오전 11시 삼성화재 빌딩에서 삼성그룹 산하 삼성방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삼성의 축적된 방재기술과 방재청의 행정력을 접목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입안, 제시하는 기능을 맡는다.

방재청은 기획단 첫 사업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 시행되기 이

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내진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기준 마련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신규 시설 및 건축물뿐 아니라 과거 시설물에 대한 내진구조 보강방안이 마련, 적용됨으로써 관련시설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

방재청은 또한 기획단 주도 아래 가스, 송유관 등 비구조적 시설물의 내진 및 안전대책과 공공시설에 대한 지진재해 저감계획 수립 의무화 조치 등도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대통령 소속 '건설기술위원회' 신설

이르면 2005년 8월 중에는 건설기술과 건설산업제도, 건축문화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비상설기구)가 공식 설립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을 지식기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토기반시설 품격을 확보, 기술·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안'을 마련, 2005년 6월 18일 입법 예고했다.

규정안은 설립될 위원회에 △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설기술 혁신 △문화 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축 및 시설물 품격 제고 △기술 및 문화발전을 촉진하는 건설산업제도 구축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에 필요한 중요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또,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의 장관과 건설기술·건축문화·건설산업제도 선진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건교부 장관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회의 각종 심의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10인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실무조정위원회의 장은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겸직하도록 했다.

실무조정위원은 관련부처의 1급 관계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설립되는 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추진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업무수행 지원과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교부에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5년 6월 28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규정안이 확정되게 된다며 이에 따라 두 달 정도 후에는 위원회 설립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3층 1천㎡ 이상 건물' 내진설계

2005년 7월 말부터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2006년 1월 말부터 발코니 외벽으로부터 1m까지의 면적이 건폐율 산정시 포함되고 공동주택 높이와 이격거리 기준도 강화된다.

아울러 2005년 9월 11일 시행될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60점 이

상 득점과목에 대해 추후 세 번까지 응시를 면제하는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005년 7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17개 법률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건교부, '전기, 소방, 구조' 통합 점검

건축물에 대한 전기·소방등의 점검을 통합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2005년 7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7월 3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이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시행돼 건축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내용 간 중복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유지관리점검제도를 신설, 관계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점검들을 통합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 점검을 고려, 점검 주기와 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기와 소방안전 점검, 구조안전 점검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전기는 2년 마다, 소방은 3년 마다, 구조는 매해 시행돼 건축주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합 점검이 이뤄질 경우 건축주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점검 실시로 건축물의 안전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점검을 통합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연구를 통해 개별 법률

의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건축허가 수수료를 평균 45% 정도 인상했다.

200㎡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2천~3천원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던 것을 3천~4천 500원으로 조정했다. 또 200㎡ 이상 1천㎡ 미만 단독주택은 5천~7천원에서 7천~1만원, 1천㎡ 이상 5천㎡ 미만 건축물은 2만 5천~4만원에서 3만5천~6만원으로 올렸다.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5만~7만 5천원에서 7만~11만원으로,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10만~15만원에서 14만5천~21만원으로 인상했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이후로 건축허가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건축허가 처리업무가 내실있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5년 간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승률을 고려,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허가수수료가 인상되면 민간 건축전문가와 퇴직 공무원 등을 고용, 허가처리업무를 지원하는 등 업무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건설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건설신기술의 인증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정부발주 용역의 이행실적증명서 제출부담이 완화된다.

또 주택건설협회의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확인서 발급제한을 포함한 1천여 건의 유사 행정규제가 전면 개선되고 해외 건설협회 등의 지회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2005년 7월 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술·신제품 규제 개선방안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2005년 9월까지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 신기술·신제품 규제개선안

정부는 건교부 등 5개 부처에 산재된 신기술 관련 7개 인증제도(NEF로 통합)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의 시공접목을 위해서는 최소 1.5~2년이 소요되지만 인증

유효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됨으로써 공사 수의계약 자격 획득, 조달청 우수시공사 선정, 기업 브랜드가치 제고 등의 실질적 지원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신기술 제품의 인증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6년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 등의 혜택을 받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중소기업 신기술 우선 구매제품의 구매 지원기간을 최초 사업화 추천일로부터 3년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근거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비율을 20%로 확대하고 단체 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되는 오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 구매비율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 별로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대상 예정품목을 사전 공시함으로써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휴먼특

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용역 발주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하거나 별도의 용역실적 전산발급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제한을 완화해 기술이사 등의 임원을 전담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술개발 전담요원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완화한다.

나아가 기업부설연구소의 독립된 연구실 구비 등의 요건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연구공간 관련제한(고정벽체, 별도출입문확보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33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의 건축 허가만으로 과기부 승인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 발주 연구개발 용역과제 수행 시 의무화된 보증보험사의 이행계약 및 선급보증보험 인수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 유사행정규제 개선안

정부는 공사, 공단, 협회 등 준공공기관 관련 규제 2천 298건 가운데 257건을 폐지하고 749건을 개선하는 등 1천 6건을 2005년 9월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규제는 주무관청의 협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규제, 위임·위탁업무 관련 규제, 협회·회원사간 불합리한 규제, 국민생활 관련 규제, 비합리적 규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협회 임원선출 및 지부설치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

권이 협회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 아래 폐지된다.

기획단은 그동안 주무부처 간섭으로 지부설치가 제한됐던 해외건설협회 등 일부 협회의 지회설치가 보다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위임·위탁업무 운용면에서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교육 이수증 미발급, 각종 확인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확인서 발급까지 제한하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회비부과규정이 지목됐고 오는 9월까지 이를 포함한 유사 규제들을 폐지한다는 게 기획단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협회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이사회 의결 등 통제장치를 통해 회원 탈퇴를 제한하는 규제, 탈퇴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조항, 관계당국에 대한 서류제출시 협회 경우 의무화 규제 등도 개편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 일부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기간과도 적용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 규정(1월 이상 2년 이하)을 엄수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1심의관실 관계자는 “지자체 산하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에 대해서도 행자부 주도 아래 올해 하반기 중 일제 정비될 것”이라며 “특히 유사 행정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시 각 부처별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 신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재청 '재해예방 검토' 사전협의 의무화

2005년 7월 말부터 개발계획 수립이나 시설사업 및 골재 채취사업 인허가 단계의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가 의무화된다.

또, 자연재해 신기술 장려금제가 신설되고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강화됨으로써 신기술 활용이 촉진되고 부실시공이 근절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2005년 7월 13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7일 이전에 공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당초 시행령에 포함됐다가 법제처 심의과정 <본보 6월 28일자 1면 참조>에서 삭제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일괄 입찰방식 발주계약 허용 방안이 담겼다.

일괄 입찰 적용 사업은 △복구비 10억 원 이상 사업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내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한 복구비가 20억 원 이상으로 책정됐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일괄입찰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요건은 삭제됐다.

수습대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이며, 지자체가 수해복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발주방식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의미가 더 크다”며 “사업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수의계약이 감사 때문에 기피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방재청은 또 부처 협의과정에서 삭제된 입찰가점 부여안을 대체할 자연재해 신기술 촉진책으로 신기술 표지제와 신기술 장려금제를 도입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자연재해 저감에 유용한 신기술 및 기존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거쳐 우수기술에 신기술 표지를 부여하는 한편 신기술 활용 지자체에 장려금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다만 장려금 지급은 방재청의 별도 고시기준에 따라 공사비 절감효과와 사후 유지관리면의 효과 등이 충분히 검증된 기술에 한해 집행된다.

방재청은 나아가 매년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는 수해복구공사의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책도 구체화했다.

법 시행령상 규정된 50억 원 이상 복구공사, 복구물량 500억 이상 시·군·구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후평가사업계획의 타당성, 공사의 적정성,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은 물론 복구사업의 침수 저감능력, 경제성, 주민 만족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방재청은 또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 피해 우려 시설물, 붕괴 위험이 큰 댐·저수시설의 재해 예방책 강구를 위한 부문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행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등록, 변경, 처벌기준도 마련했다.

등록기준은 방재청 고시 교육이수 기술인 2인과 함께 △지진분야-토질·기초기술사, 토목·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각 1인과 토목·건축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각 2인 △댐·해일분야-토

질·기초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각 1인과 토목기사 및 도시계획기사 각 2인이고 학경력 대체기술자 활용도 가능하다.

방재청은 대행자 요건이 건설용역 업계에 적합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업계의 새로운 수주영역을 창출하는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재청은 이와 별도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특히 입법예고 당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부칙에 명시했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제'의 시행시점에 대해 법제처 지적을 받아들여 이달 말 공포 시점에 동시 시행하기로 변경,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새로이 수립되는 개발 관련 행정계획이나 시설사업은 방재청 산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협의 대상 행정계획은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협의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계획, SOC민자시설기본계획(민투심 심의진), 에너지 개발계획, 교통시설 건설계획, 하천 이용 및 개발계획, 해양 및 수산개발계획 등 각종 국토개발계획 단계는 물론 산지개발 및 골재 채취(계획 수립 및 승인 이전), 관광단지과 체육시설 지정 및 계획을 포괄한다.

서울고법, 아파트 하자기간 위헌 재청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지 2개월여 밖에 안된 주택법의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조항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6부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법 46조 1항과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46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위헌 제청 이유로 주택법이 집합건물법 제 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법 집행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관련, 주택법은 시행령에 부위별 주택부품의 내구수명 등을 고려, 최고 10년까지 차등을 둔 규정

을 마련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주택법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법 규정을 사문화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은 부위에 상관없이 10년의 하자담보 책임을 져야 했고 이는 사업 주체의 경제적 부담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영광등은 내구연한이 5년 밖에 안되고 벽지도 그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일률적으로 10년 간의 하자담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2004년 12월 29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한 한 집합건물법을 배제하고 주택법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 별로 부품의 내구수명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법 개정안은 2005년 4월 국회 건교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본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 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 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을 뒤 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하자 담보책임 기간주택법 시행령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택법의 적용을 배제한 집합건물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배제한 주택법과의 상충 문제는 상존해 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문제를 위한 심판대에 올려 놓았다.

김태환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위헌심판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현행 집합건물법의 경우 공동주택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때에는 세부 공사의 종류나 내용 등에 관계없이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민법을 준용하여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구연한이 5년 밖에 안되는 형광등을 10년이나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법에서도 내력구조물 등 시설물 안전에 중요한 곳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10년까지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주택법은 건설공사의 기술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 부품 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헌판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선진 외국에서도 구조부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 놓은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상반기 건설임금 6% 임금인상

올 들어 2005년 6월 말까지 임금협약을 완료한 건설업체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한 6.0%로 집계됐다.

2005년 7월 8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인상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6월 말 현재 전 업종 6,228개 사업장 중 1,635곳이 임금교섭을 완료한 가운데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총액기준 4.7%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동기 5.4%에 비해 0.7%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로 노동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임금인상률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조사대상 169곳 63개 사업장 임금교섭을 타

결한 가운데 평균 임금인상률은 6.0%로 지난해 같은 기간(8.6%)보다 2.6%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올해도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인 데다 건설업체에도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업을 비롯한 전 업종의 올 평균 임금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떨어져 5% 초·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은 주 40시간제 실시의 수혜업종으로 임금인상률이 지난해(5.5%)에 비해 4.3%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타 업종들과 대조를 이뤘다.

건산연, "발코니 면적 총량제 도입해야"

공동주택의 발코니 개조가 이미 보편화된 현상인데도 정부가 단속에만 치중, 잠재적인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2005년 7월 14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발코

니의 개념과 기능이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두 박사는 건축구조 기술의 발전으로 설계단계에서 발코니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개념과 기능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Needs)가 반영되고 있으나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

에만 치중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아파트의 30%, 2000년 이후 신규 입주 아파트의 60%에 해당하는 약 203만 가구가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발코니를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두 박사는 이처럼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단속해 원상복구를 강제할 경우 이종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3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두 박사는 최근의 설계 및 건축구조 기술의 변화, 소비자의 생활 양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1990년 대 초의 기준을 최근의 변화된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발코니 개념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단속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구조안전 확보문제는

현행 건축법령의 구조안전에 관한 규정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성 및 피난공간 확보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코니 개조 문제 해결을 위해 평형 별 최대 발코니 면적(10평 이내)을 미리 정하는 발코니 면적 총량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분양 때 발코니 개조여부를 옵션으로 포함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발코니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주택소비자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넓은 주택으로의 이전욕구 등을 충족시켜 가수요를 방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아파트 진동저감 기술 적용

현대건설이 국내 처음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바람과 지진에 의한 진동을 줄이는 첨단기술을 적용,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바람과 지진에 의한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동조역체 감쇠기' 시설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키로 했다고 2005년 5월 6일 밝혔다.

동조역체 감쇠기(TLD)란 건물 중량의 약 300분의 1에 해당하는 유체를 채운 저장탱크를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해 강풍 발생시 물의 출렁임을 이용, 건물의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 진동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진동제어장치다.

현대건설은 'TLD 공법' 적용을 위해 세계 유수의 초고층 건물 풍동 실험 연구소가 있는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 대학과 세계적으로 구조 설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MKA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현대건설은 부산 해운대 하이페리온에는 이미 설계 초기부터 초고층 건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국내 최고 수준의 내진·내풍 설계가 반영돼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국내 최초로 TLD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입주자들이 태풍이나 지진 발생시에도 현기증이나 두통을 느끼지 않고 쾌적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 특급기술자 '기술사만 가능'

인정기술자로 불리는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 정비된다.

이에 따라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며 학·경력자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될 수 없게 된다.

2005년 7월 21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제도 혁신을 위한 종합 정비방안을 확정, 법령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일간 건설 신문)

중기청, 신설 건설업체 갈수록 늘어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7월20일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2005년 6월 신설법인 동향 자료에 따르면 건설 및서비스업종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같

은 달에 비해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순수 건설업만 보더라도 작년 동월 대비 8%가 증가해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란 업종명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는 설비업의 경우 1년 전보다 그 수가 무려 88.6%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건설업종 신설 법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방침이 발표되면서 기준 개정 이전에 법인 등록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새로 생긴 건설 및 설비 업종의 법인 수는 지난 5월에 비해 30.2% 감소했다.

한편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부동산 및 임대업 역시 6월에 382개가 다시 생겨나 지난해 같은 달의 294개에 비해 29.9%나 증가했으며 금년 5월에 비해서도 14.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 중 전체 업종을 합친 신설법인 수는 모두 4,679개로 지난해에 비해 8.1%가 늘었으며 전 달과 비교해서는 6.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 충북, 강원,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증가폭이 컸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의 부도법인 수는 모두 168개에 달했으며 부도 법인 대비 신설법인 수를 의미하는 창업배율은 지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27.9를 기록, 성공적인 창업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신설법인 수 조사는 2005년 6월 11일부터 5일 동안 중소 기업청에서 실시했다.

공정위, 용역 하도급과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으로 용역 하도급과가 신설되고 기존 하도급1과와 2과는 각각 건설 하도급과와 제조 하도급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대내·외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005년 8월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비스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 효과 분석, 독과점 산업·시장의 경제적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용역 하도급과와 경제분석팀을 신설했다.

또 전화 및 인터넷 민원의 접수·처리·관리업무와 민원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합상담실을 정식 직제로 만들었다.

건설신기술 지정 급증세

건설 신기술 지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05년 7월 27일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모두 23건의 건설 신기술 지정이 신청돼 이 중 19건의 공법에 대해 건설 신기술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비교적 경기가 좋았던 건축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반기에는 △건축 시공 및 조경분야 신기술 지정 7건 △토질 및 기반이 4건 △수자원 및 항만, 토목구조 및 시공이 각각 3건 △상하수도, 도로시설 및 철도가 각각 1건씩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신기술 지정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를 개선키 위해 예비심사 보완 규정을 다소 완화했으며 신기술 연장에 대해서는 1차 위원회 심

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건설업의 선진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건설 신기술 개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3년 신기술 지정을 시작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모두 1,081건의 신기술 지정이 신청돼 42.7%인 462건이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

분야별로는 토목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 99건 △건축 82건 △토질 및 기초 66건 △도로 60건 △조경 12건 △기타 29건 등이었다.

주체별로는 중소기업체가 315건의 건설 신기술을 지정받았으며 대기업이 107건, 개인이 40건이었다.